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주경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0535

발의연월일: 2021. 6. 3.

발 의 자:윤주경·박형수·서범수

서병수・윤창현・이 영

이채익 • 전주혜 • 정진석

태영호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에 대한 병역의무 등을 수행하던 중 불의의 사고 등으로 상이를 입은 자로서 국가는 이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갖추어야 하지만, 이들이 받는 예우가 장애인이 받고 있는 일부 혜택 에서조차 제외되어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가 충 실히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.

특히 보훈보상대상자가 생활 및 생계유지를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지방세를 감면하여 보훈보상대상자들에게 합당한 보훈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보훈보상대상자가 보철용·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중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 9조제4항).

법률 제 호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"를 "제6조의3부터 제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제29조(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 | 제29조(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 |
| 면) ① ~ ③ (생 략) | 면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|
| ④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| 4 |
| 지원에 관한 법률」 <u>에 따른 국</u> | 제6조의3부터 |
| <u>가유공자로서</u> 상이등급 1급부 | 제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|
| 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 | |
| 람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| |
| 정하는 사람(이하 "국가유공자 | |
| 등"이라 한다)이 보철용·생업활 | |
| 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 | |
| 득하는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| |
| 바에 따라 대체취득하는 경우 | |
| 를 포함한다) 다음 각 호의 어 | |
|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 | |
| 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| |
| 어느 하나의 세목(稅目)에 대하 | |
| 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| |
|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 | |
| 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| |
| 면제한다. 다만, 제17조에 따른 | , |
|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| |
| 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. | |
| 1. ~ 4. (생 략) | 1. ~ 4. (현행과 같음) |

⑤ (생 략)

⑤ (현행과 같음)